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호 2000. 2. 29)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성호영

1. 검토경과

가. 2000. 2. 29 사천시장 제출

나. 2000. 2. 29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0. 3. 1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이유

2000. 1. 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할 때에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함(안 제22조의2)
- 나.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소유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각 사용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9조)
- 다. 주행세를 신설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방법 등 규정(안 제40조의2)
- 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함 (안 부칙 제2항)

4. 검토의견

ㅇ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체계에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시·군세로서 주행세가 신설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일부 비합리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내용 중 특별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